

6. 가입 · 탈퇴 규정

제정 2017. 09. 20.

개정 2024. 07.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규약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강진군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4. 07. 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07. 11.>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이를 상정할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첨부)
4. 단체의 규정
5. 종목개요 및 종목관련 제 규칙
6. 해당 단체의 회원등록 및 조직현황
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8.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9. 도 해당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
10. 가입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11. 기타 참고자료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강진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2회 이상일 것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본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강진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본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강진군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5. 본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 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결격단체 지정)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 요건을 매년 심의하여 해당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결격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의거 제명한다.

- ② 결격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 ③ 본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는 탈퇴하게 한다.

1. 회원종목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회원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종목단체인 경우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종목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2017. 0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